

연말정산 공제내역과 필요한 서류(2011.12.31현재)

구 분		공 제 오 건	공 제 금 액	필 요 서 류
인	기 본 공 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본인 ·배우자 ·부양가족:직계존속-남, 여60세이상(1951.12.31이전출생) 직계비속-20세이하(1991.1.10이후출생) 형제, 자매-20세이하 60세이상 6개월이상 위탁아동 포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인당 150만원 *소득금액(이자·배당·부동산임대소득 포함)이 100만원 초과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(※부양가족 공제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반드시 첨부-부양가족 인적사항 기재 시 필요)
	추 가 공 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경로우대자-70세이상(1941.12.31일 이전출생자) ·장애인공제-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지인 경우 ·부녀자공제-부양가족 있는 세대주인 독신여성근로자,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·자녀양육비공제-6세이하(2005.1.10이후출생)의 직계비속(일양자, 위탁 아동포함)이 있는 모든 여성 및 남성 근로자 ·다자녀추가공제-나이와 관계없이 2명이상이연 공제됨(손자불포함) 출생, 일양자 공제-해당기간에 출생, 일양신고를 한 경우(1명당 연200만 원공제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1인당 연 100만원 공제 -1인당 연 200만원 공제 -1인당 연 50만원 공제 -1인당 연 100만원 공제 (취학·전아동의 교육비공제와 중복공제 가능) -2인당 연100만원공제(1명추가시 200만 원 늘어남.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·장애인-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-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수첩사본②국기유공자등에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-국기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③기타 장애인-장애인증명서
제	연 금 보험료 공 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(사용자부담금 제외) ·공무원연금법·군인연금법·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·별정우체국법에 의한 기여금 또는 부담금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당해연도 본인명의로 가입한 연금보 (소급분 납부보험료는 제외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국민연금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납입증명서
	보험료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국민건강보험료·고용보험료 ·보장성보험료 ·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액공제(사용자부담금 제외) 한도-100만원 한도-100만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 ※지동이체 통장사본으로도 공제 가능
특	의료비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본인, 장애인, 경로우대자 의료비 ② ①을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공제대상의료비=의료비지출액(한도 없음) (※②의 의료비금액이 총급여 약 4%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) ②공제대상의료비=의료비지출액-(총 급여액 4%) (한도700만원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의료비지급명세서 ·의료기간이 발행한 영수증 (신용카드중복공제가능) 11년1월~11년12월사용분(12개월)
	교육비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근로자본인(대학원교육비,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포함) ·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, 직계비속·형제자매 및 일양자 ① 유치원아·영유아·취학전아동 ② 초중·고등학생 ③ 대학생 ·장애인특수교육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한도-전액공제 *연령제한 받지 않음 한도-1인당 300만원 한도-1인당 300만원 한도-1인당 900만원 한도-전액공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교육비납입영수증 (공납금납입영수증) ·학원수강료납입영수증 ·교육비납입영수증 (공납금납입영수증) ·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·방과후학교수업료, 급식비, 교과서구입비

제 목		금 액	필 요 서 류
특 별 공 제	주택자금공제	한도-①+②+③+④의 합계1,000만원 ※ ①, ②, ③, ⑤, ⑥의 공제한도는 각300만원 - 월세액의 40%(월세보증금제외) - 주택마련자축남입증명서 - 주택자금상환증명서 - 장기주택자당차입금 이자상환액전액 - 주택임대차계약서, 금전소비대차계약서, 원리금상환증빙서류(무통장입금증등)	①주택마련자축공제:당해연도 지축률입액의 40% ②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:당해연도 원리금상환액의 40% ③주택임자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:당해연도 원리금상환액의 40% ④장기주택자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:당해연도 이자상환액 전액 ⑤월세액 소득공제:우주택 세대주 총급여 3,000원 이하 부양가족있는 근로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차인 ⑥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: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, 소득공제신청서(주민등록등본, 무주택확인서등) 은행에 제출 ①법정기부금(국가, 무료·실비의 사회복지 시설등) ②우리사주조합기부금 ③지정기부금(사회·복지·문화·예술·교육·종교·자선 등 공익성기부금, 노동조합비, 교원단체회비, 공무원직장협의회 회비) *특례기부금 폐지 (2011년 07월01일 이전 특례기부금은 공제가능)
기 타 소 득 공 제	기부금공제	전액(근로소득금액 범위내) 한도-(근로소득금액-①-②)*80% 한도-(근로소득금액-①-②-③)*80% (종교단체는 10%) ·기부금납입증명서 (기본공제대상자-직계존속, 형제자매 포함)	개인연금(본인명의 2000. 12. 31이전 가입분 불입액의 40%) 연금저축(본인명의 2001. 1. 1이후 가입분 불입액) 퇴직연금(불입액 전액) 한도-72만원 한도-400만원 한도-소득금액의 50%
기 타 소 득 공 제	투자조합출자	·개인연금납입증명서 ·연금저축납입증명서 ※ 통장사본제출로 공제 가능 ·투자조합출자(투자) 확인서 ·출자등소득공제 신청서 ·신용카드소득공제 신청서 ·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 ·현금영수증 사용금액확인서 ·지로납부영수증 또는 학원장이 발급하는 학원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 ·우리사주조합의 출연금액확인서	·근로자 본인 명의로 출자(투자)한 출자액의 15%
기 타 소 득 공 제	신용카드	·신용카드사용액(11.01.01~11.12.31사용분)이 금여의 25% 초과시 초과금액의 20%공제(직불카드는 25%공제) 사용금액=신용카드+직불카드+기영식설틀카드+현금영수증+학원자료 날부금액 한도-소득금액-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% 중 적은 금액	
기 타 소 득 공 제	우리사주조합 출연금공제	·금제금액-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 한도-10만원(1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기부금 소득공제를 할 수 있음) ·정치자금영수증 (무정액영수증, 정액영수증) ·우리사주조합의 출연금액확인서	·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·정당(후원회 등 포함)에 기부한 정치자금 ·95. 11. 1 ~ 97. 12. 31중 미분양 주택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·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날부한 소득세 ·국외근로소득액-국외납부세액-국내소득금액
기 타 소 득 공 제	세액공제	·세액공제신청서, 미분양주택확인서,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,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·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	·국외근로소득금액 30%

※ 2011년도 2개 이상의 근무지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은 근로자는 전 근무지의 【근로소득원 천정수영수증】 및 【소득자별 근로소득원 천정수부】를 제출해야 함. (연말정산서류 1월 31일까지 (늦어도 2월 첫째 주 까지) 부탁드립니다.)